
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

제1조(목적) 이 요령은 「관세법」 제226조에 의한 ‘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’에서 지정한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화학제품안전법’이라 한다.)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) ① 이 요령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은 「화학제품안전법」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신고 제품의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(이하 ‘요건확인기관장’이라 한다.)에게, 승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(이하 ‘요건확인기관장’이라 한다.)으로부터 통관 전에 수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시험·연구용, 전량 수출용,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용도로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요건확인신청 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, 별지 제3호서식에

다른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④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, 제4항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의 확인 신청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판단 결과 통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.

제3조(수입요건확인 신청)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‘화학제품 관리시스템(<http://chemp.me.go.kr>, 이하 ‘관리시스템’이라 한다.)을 활용하여 제2조제2항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장에게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‘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’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.

제4조(수입요건확인 처리) ① 요건확인기관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을 한 제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,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입요건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증빙자료의 요청 및 검토·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급 소요기간에서 제외한다.

1. 「화학제품안전법」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여부

2. 「화학제품안전법」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여부

② 요건확인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재검토기한)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「관세법」 제226조에 따른 「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에 ‘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’으로 포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수입요건확인 신청 대상 관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
(제2조제3항 관련)

1. 제2조제3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이란 「화학제품안전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 포함되나, 전량 수출용, 연구·실험용, 전시·박람회출품용, 「화학제품안전법」 관계 조항에 따른 확인·신고, 승인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. 다만, 여행자가 휴대한 것, 국제우편물, 특송화물에 의해 판매나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어 수입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2. 제2조제3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가. 수입 목적과 제품의 용도
 - 나.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수입량
 - 다. 수입자명, 소재지 정보
 - 라. 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」(환경부 고시 제 2020-117호)[별표 2]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적용범위
 - 마. 판매, 증여 또는 판매, 증여 목적으로 진열, 보관, 저장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제품 라벨(건본 등 문구)
 - 바. 기타 생활화학제품의 사용계획 등
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											
신청인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padding: 5px;">상호(명칭)</td> <td style="width: 50%; padding: 5px;">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성명(대표자)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)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padding: 5px;"> 소재지(사업장) 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 </td> </tr> </table>	상호(명칭)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)	소재지(사업장) 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							
	상호(명칭)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										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)											
소재지(사업장) 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													
신청 제품 정보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 padding: 5px;">제품명</td> <td style="width: 40%; padding: 5px;"> 종류 <input type="checkbox"/>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·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</td> <td style="width: 30%; padding: 5px;">수입량 (단위 :)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승인 또는 확인신고번호</td> <td colspan="2" style="padding: 5px;">제조국명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HSK NO.</td> <td colspan="2" style="padding: 5px;">제조사 소재지(승인제품에 한함)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제조회사명</td> <td colspan="2" style="padding: 5px;"></td> </tr> </table>	제품명	종류 <input type="checkbox"/>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·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	수입량 (단위 :)	승인 또는 확인신고번호	제조국명		HSK NO.	제조사 소재지(승인제품에 한함)		제조회사명		
제품명	종류 <input type="checkbox"/>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·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	수입량 (단위 :)											
승인 또는 확인신고번호	제조국명												
HSK NO.	제조사 소재지(승인제품에 한함)												
제조회사명													

「관세법」 제226조에 의한 ‘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’ 및 ‘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 확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수입요건확인기관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서

신청인	상호(명칭)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)
	소재지(사업장)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
신청 제품 정보	제품명	종류 <input type="checkbox"/>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·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
	승인 또는 확인신고번호	수입량 (단위 :)
	HSK NO.	제조국명
	제조회사명	제조사 소재지(승인제품에 한함)

「관세법」 제226조에 의한 ‘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’ 및 ‘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을 확인합니다.

수입요건확인기관장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수입요건 면제확인결과서

신청인	회사명	
	대표자	전자우편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
제조업자	제조국명	
	회사명	
면제확인 대상제품	제품명	
	안전기준상의 품목 구분	
	수량	
	사용장소	
면제내용	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[],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[]	

「관세법」 제226조에 의한 ‘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’ 및 ‘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의 수입요건 면제확인결과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수입요건확인기관장

